

# 예산총칙

2014년도 추경 1 회

제 1 조 2014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425,116,578	12,753,497
일반회계	419,054,659	12,571,640
특별회계	6,061,919	181,858
기타특별회계	6,061,919	181,858
상·하수도사업특별회계	2,813,930	84,418
주택사업특별회계	80,923	2,428
의료보호기금사업특별회계	956,656	28,700
사회진흥소득사업특별회계	235,000	7,050
기초생활보장특별회계	1,048,781	31,463
천사성분재공원운영관리특별회계	926,629	27,799

제 2 조 2014년도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2014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8,0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,0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경비는 상호간에 이용할 수 있다.